

##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최혜진\*\*      남미경\*\*\*      손원경\*\*\*\*

### A Review of Laws and Evaluation Criteria on Health, Nutrition, and Safety in Child Care Centers

Choi, Hye Jin      Nam, Mi Kyoung      Son, Won Kyoung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 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건강, 영양, 안전,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지표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의 보육백서기획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공동저자: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jsfarm@hanmail.net)

##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존 요소는 건강이며, 건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Marotz, 2012; Susan, 2013). 또한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및 신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경험과 교육의 결핍은 전 생애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발육이 왕성하며 일생에 걸친 습관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와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건강이란 개인의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질병의 치료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건강이란 질병에 감염되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건강은 신체적 건강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서 질병이 없다거나 아프지 않다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이순형 등, 2008).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영유아 건강에 대한 WHO의 정의는 ‘건강하다는 것은 영유아의 성장발육이 저해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로 단순히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모든 인간발달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임미혜, 채혜선, 2011).

이와 같이 건강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각 개인이 건강위해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 및 행위 증진까지 포함하는 예방적 건강의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신체적 안녕은 신체발달, 체력, 운동관련 소양을, 사회적 안녕은 또래 및 성인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관련 소양을, 정서적 안녕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정서적 소양을 뜻한다(유은영, 2011). 따라서 영유아기 건강은 각 요인들이 상호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는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생활로 인한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다 더 철저한 건강과 영양,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어느 시기보다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Morrison, 1998). 즉 영유아기는 인지적으로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에 신체적으로는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여 신체균형유지 능력이나 감각기능, 운동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나 자기조절 및 인과관계 추론에 어려움을 겪기에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여 항상 우발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곽은복, 2002).

또한 이 시기에 영양소를 균형 있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일생을 통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신체의 성장,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며 활동량이 가장 많은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장애 또는 영양 결핍이 될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임미혜, 채혜선, 2011).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자신의 건강과 영양상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스스로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양교육(이기현, 2009)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가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의 필요성 및 식습관, 태도를 알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주영은, 성영화, 이숙자, 2011)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일생에 걸친 바람직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그리고 평가인증 등에서도 건강과 안전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평가인증지표는 40인 이상 6개 평가영역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역이 2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40인 이하의 경우에는 5개 평가영역 중 2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영역에서, 누리과정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영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유아의 건강은 더 이상 가정이나 개인의 건강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Marotz, 2012; Sorte, Daeschel & Amador, 2012), 사회적 양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점차 영유아 보호기관과 행정당국의 책무로 연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관련 법규나 지침, 평가인증지표의 기준과 내용과 더불어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연구동향 고찰을 통하여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법규 및 평가인증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 II.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 규정 현황

### 1.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51호)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228호)에 나타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및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2014년 1월 14일 일부 개정되었다. 건강, 영양, 안전 부분에 대하여 중요 내용이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영유아보육법 내용 변천

조항	내용
1991. 1.14. 제정	<p>제20조 (건강진단)</p> <p>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2004. 1.29. 전면 개정	<p>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p> <p>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32조 (치료 및 예방조치)</p> <p>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33조 (급식관리)</p> <p>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p>
2008. 12.19. 일부 개정	<p>제31조의2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등)</p> <p>①보육시설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공제회에 가입한 보육시설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① 생략</p>
2011. 8. 4. 일부 개정	<p>제31조의3 (예방접종여부의 확인)</p> <p>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p>

		<p>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p>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2011 12.31 일부 개정	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 시설)	<p>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 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2013 8. 13 일부 개정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p>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위의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3장 보육시설의 운영’ 속에 건강진단(20조)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2004년 1월 전면개정을 하면서 건강, 영양, 안전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31조), 치료 및 예방조치(32조), 급식관리(33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1조에서는 이전에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만을 언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서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급식 관리에 대한 내용을 33조에 추가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육시설안전공제사업(31조의 2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고, 2011년 8월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31조의 3 신설). 또한 기존에 있던 치료 및 예방조치(32조)의 내용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의 의심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규정에서 기존에 놀이터에 대한 규정만 있던 것을 강화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관한 내용(15조의 3 신설)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일부개정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33조의 2 신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 및 일부개정을 거듭하면서 건강관리, 응급조치, 예방접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급식 등에 관해 어린이집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질병예방조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교직원의 질병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의 구체적인 지침의 틀을 국가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8일 마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사회복지부령 제876호)은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2013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령 제228호)개정되었다. 1991년 제정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조(보육시설 시설기준)에 따른 [별표2]에서는 보육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수유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22조(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른 [별표8]에서는 명칭 및 종사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행규칙 24조(건강검진 등)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94년 2월 개정에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에 따라 2005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33조(건강진단)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34조(급식관리)가 신설되었다. 건강진단(33조)에서는 영유아 뿐 아니라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유아 건강진단항목(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과 종사자 건강진단항목(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명시하였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필요에 따라서는 격리, 휴직 또는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관리(34조)에서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급식을 제공할 것과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8]에서는 영유아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과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06년 4월에는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33조 1항)이 추가되었다. 2012년 2월 개정에서는 [별표8]에 급식 관리에 대한 내용 7가지를 추가하여 제시하였고, 위생관리 부분에서 환기 및 청소에 대한 내용을, 차량안전관리 부분에서 영유아 등원, 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별표 8”의 내용 중 ‘안전, 급식, 위생, 차량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 및 인적 환경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부터 고려하고 있으며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추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식관리

영유아를 위한 영양과 관련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도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나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나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위생관리

영유아를 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조리실·식품 등의 원료·재료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 검사 성적서는 갖춰 두어야 한다. 3)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 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 (4)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할 경우)

영유아를 위한 차량안전관리를 위하여 차량종사자 및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아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하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상의 제도적인 기준들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며, 영유아의 건강한 삶의 기준이 된다. 건강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정기 건강검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급식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식단 및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영양관리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과 관련하여 급식 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설비 위생의 지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2.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 아동복지법

1962년 12월 30일 아동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1981년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 아동복지법에는 처음에는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지속적인 개정과정에서 어린이집의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아동복지법에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아동복지법 내용 변천

조항		내용
아동복지법 1962. 12.30 제정	제20조 (아동의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981.4.13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1981.4.13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아동복지법 2000.1.12 전면개정	2조 (용어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포함됨)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9.27 일부개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추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8.6.13 일부개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추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 에서의 폐쇄회로텔레 비전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포함)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1.8.4 전면개정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중·유괴의 예방과 방지 3.약물의 오남용 예방 4.재난대비 안전 5.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2년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졌다. 아동복지법은 1981년 4월 13일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었으나 관련 내용의 변경은 없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면개정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용어가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제9조에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26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고 2008년에는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교육의 실시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때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2011년8월 4일 실시된 전면개정에서는 제23조에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주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제31조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중·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법률 제11572호)과 아동복지법 시행령(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20 24454호)에 나타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및 안전에 관련된 규정은 크게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4조제1항에 제시한 안전교육은 크게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각 안전교육의 실시주기와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7항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와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 내용은 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의무나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3.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 평가인증지표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지표(40인 이하, 40인 이상)는 시설 규모 및 유형에 따라 40인 이상 지표, 39인 이하 지표, 장애아 전담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40인 이상 지표는 총 6개 영역(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보건복지부, 2013), 이 중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련된 영역이 2개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인증의 참여자격 확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항목을 살펴보면 1주기에 4개 항목에서 2주기에는 9개로 증가하였다. 그 중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에 대한 필수항목은 동일하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 시설 설치’의 항목이 신설되어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에 대하여 2주기 평가인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나타났다. 평가항목과 관련하여서는 1주기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의 평가항목은 ‘청결과 위생’ 8항목, ‘질병관리’ 3항목, ‘급식과 간식’ 2항목 총 13항목이며 안전영역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기 평가인증지표에서 건강과 영양영역은 ‘청결과 위생’ 8항목, ‘질병관리’ 2항목, ‘급식과 간식’ 2항목 총 12개 항목으로 적절성이 고려되어 조정되었으며, 안전영역은 ‘실내외 시설의 안전’ 5항목, ‘영유아의 안전보호’ 5항목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3> 1, 2주기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의 평가항목 비교

영역	1주기	영역	2주기
건강 과 영양 (13)	1. 실내 공간의 청결	건강 과 영양 (12)	1. 실내 공간의 청결
	2. 보육실의 환기, 온도와 습도 조절		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관리
	3.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유지		3. 놀잇감의 청결
	4. 조리실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6. 보육교사의 영유아의 손 씻기		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7.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8. 놀잇감의 청결		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9.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	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10.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질병 관리	10.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11. 영유아와 종사자의 정기 건강 검진		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급식	12. 영유아를 위한 급식	급식	

과 간식	13. 영유아를 위한 간식	과 간식	12. 영유아를 위한 간식
안전 (10)  영유아 의 안전 보호	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안전 (10)  영유아 의 안전 보호	1. 보육실의 안전관리
	2. 실내시설(보육실 외)의 안전관리		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3. 보육실의 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4. 위험한 물건의 보관		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6. 영유아의 인계과정		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7. 등원 및 귀가용 차량 운행		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8.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공지		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설비와 대처방안		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표 3>과 같이 건강과 영양영역 관련 지표가 1주기 13개의 항목에서 2주기 12개의 항목으로 조정되었다. 2주기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영역에서는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내의 각 공간의 청결과 위생, 영유아의 위생적 생활습관 지도, 몸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청결과 위생영역 1주기 평가 항목 중 ‘조리실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이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와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항목으로 조정되어 공간, 설비의 위생과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관리를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실의 환기, 온도와 습도 조절’은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로 조정되어 영유아가 더욱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주기 평가 항목에 있었던 질병관리영역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은 2주기에서는 항목에서 삭제되었지만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항목 내로 통합하게 조정되었다.

2주기 평가인증지표의 안전영역에서는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두고 보육실, 실내 및 실외 시설의 안전관리, 위험한 물건의 보관 등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인계되고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주기 평가 항목의 실내외 시설의 안전영역은 실외시설과 보육실을 제외한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보육실의 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및 위험한 물건의 놀잇감 보관이라는 4개의 평가항목에서 보육실과 실내시설, 실외시설의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관리를 포괄하였고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놀잇감의 안전관리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5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의 안전보호영역의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삭제되고 인증 참여자격 확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항목으로 이동하여 그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 외에 평가인증 항목의 세부기준 및 세부사례 그리고 각 수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한편, 2주기 평가인증지표에서는 건강, 영양, 안전영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내 공간의 청결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과 공유 공간 포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

를 실시해야 하며 창문과 창틀, 교구장과 바구니, 사물함 뒤편 등 구석진 곳도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소독 및 청소 횟수와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인계 과정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인계 과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에는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구비 문서와 기록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건강, 영양, 안전 영역의 평가인증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련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2주기 평가인증지표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 영역의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평가인증지표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의 항목별 평가방법

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	면담	문서 확인자료	
건강 과 영양 (12)	1. 실내 공간의 청결	○	○	소독실시 기록, 대청소 실시 기록	
	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관리	○			
	3. 놀잇감의 청결	○			
	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			
	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			
	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			
	7.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			
	8.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	○		
	질병 관리	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	○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절차, 응급처치동의서, 투약의뢰서
		10.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대책, 건강검진 관련 서류, 가정통신문
	급식과 간식	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12. 영유아를 위한 간식	○	○	식단표, 급식 시행 기록
안전 (10)	1. 보육실의 안전관리	○	○	모든 보육실의 안전점검 기록	
	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	○	실내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기록	
	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	○	실외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기록	
	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	○	놀잇감의 안전점검 기록	
	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			
	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			
영유아 의 안전 보호	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	○	○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귀가동의서	
	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	○	○ 차량안전수칙	
	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	○	○ 비상시 대처방안(비상대피도, 대피요령, 보육교직원	

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역할분담) 안전교육, 소방훈련 실시 기록
---------------------	---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주기 평가인증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영역의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과 문서 확인 등을 통해 다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과 영양 영역의 청결과 위생 중 실내 공간의 청결을 위해 현장 관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실시하고 있는 소독실시 기록, 대청소 실시 기록을 문서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나 아픈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는 평정기준과 관련하여 평가를 위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 및 부모와의 추가면담의 평정기준이 신설되어 현장평가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안전 영역의 보육실과 실내외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찰과 함께 문서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처럼 2주기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영역의 지표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내용 및 세부기준의 보완 및 수정으로 구체적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각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다면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평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과 관련하여 미흡할 수 있는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못한 시설이 아직 많고,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질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건강, 영양, 안전 관련 규정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건강, 영양, 안전 관련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평가인증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건강, 영양, 안전 관련 규정 비교

	영유아보육법(2014. 1. 14)	아동복지법(2014. 1. 28)	평가인증지표(40인 이상)
제정 연도	1991년	1962년(아동복지법)	2005년 시범운영 2006년 1주기 시작
전면 개정	2004년	1981년, 2000년, 2011년	2010년 2주기 시작 2014년 3주기 시작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p>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전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li> </ul>
주요 내용	<p>1장 총칙 2장 어린이집의 설치 3장 보육교직원 4장 어린이집의 운영 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6장 비용 7장 지도 및 감독 8장 보칙 9장 별칙</p>	<p>1장 총칙 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6장 보칙 7장 별칙</p>	<p>1영역 보육환경 2영역 운영관리 3영역 보육과정 4영역 상호작용과 교수법 5영역 건강과 영양 6영역 안전</p>
건강 안전 영양 관련 내용	<p>15조-3 비상재해대비시설 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31조-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31조-3 예방접종 여부확인 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33조 급식관리 33조-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p>	<p>3장 22조-29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장 30조-36조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p>	<p>5-1~5-8. 청결과 위생(실내공간의 청결, 보육실의 환기/채광/조명/온도관리, 놀잇감/화장실/세면장의 청결,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5-9~5-10. 질병관리(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5-11~5-12. 급식과 간식(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6-1~6-5. 실내외 시설의 안전(보육실, 실내시설, 실외시설,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6-6~6-10. 영유아의 안전보호(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과정,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p>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법규들 중에서 아

동복지법이 1962년에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두 법 모두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5년 시범운명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의 취원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주로 어린이집의 설치, 교직원, 운영 등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평가인증지표는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Ⅲ.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 관련 연구동향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과 관련한 연구동향 분석을 위하여 정미라, 조경자와 배소연(2004)을 토대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의 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에서의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석, 박사 학위논문과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주제의 특성상 유아교육 및 보육, 가정학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진 논문들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분석대상이 된 등재학술지는 아동학회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영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아동간호학회, 대한가정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간된 13개 학술지가 포함되었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수는 학위논문 149편, 학술지논문 128편이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시기별,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 1.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 개관

어린이집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1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5년 단위로 묶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6> 시기별, 주제별 연구 분포

범주	'91~'95		'96~'00		'01~'05		'06~'10		'2011~		계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건강	-	-	-	2	4	5	6	15	18	15	65
영양	1	4	5	5	4	7	26	14	18	7	91
안전	-	1	6	8	24	11	22	13	15	21	121
총계	1	5	11	15	32	23	54	42	51	43	277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1년에서 1995년 사이 건강관련 연구물은 거의 연구물은 없으며, 영양과 안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



져 왔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하위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안전(N=121), 영양(N=91), 건강(N=65) 순으로 연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주제별 연구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과 관련된 연구물이 다른 하위 주제의 연구물에 비하여 적은 것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을 다룬 논문 중 의학적 관점의 연구물은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점차 연구편수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과 관련하여서는 1991년부터 점차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2010년 사이에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1991년 연구가 시작되어 점차 연구 꾸준히 연구물의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주제별 연구시기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하위 주제의 연구와 달리 2011년 이전에는 소폭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영양과 관련된 연구물보다 8편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영양, 안전이 꾸준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2. 주제별 연구 동향

### 1) 건강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실태, 건강과 관련된 제반 변인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건강교육 실태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7> 어린이집 건강관련 연구 동향

범주		'91~'95		'96~'00		'01~'05		'06~'10		'2011~		계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건강 실태	건강습관	-	-	-	1	2	1	-	7	6	1	18
	치아건강	-	-	-	1	-	2	1	2	5	1	12
건강 인식	인식	-	-	-	-	1	-	1	2	4	3	11
건강 교육	실태	-	-	-	-	1	-	-	1	-	1	3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	-	-	-	-	-	-	2	2	1	5
	정신건강	-	-	-	-	-	2	4	1	1	8	16
	총계	-	-	-	2	4	5	6	15	18	15	65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건강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6년 이전의 연구물은 없고 1996년 이후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2006년부터 점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 까지 꾸준히 연구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와 관련하여서는 ‘건강실태(N=30)’, ‘정신건강(N=16)’, ‘건강인식(N=11)’, ‘건강교육(N=8)’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부터 모든 하위범주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5년부터 어린이집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사항을 평가인증 지표로 삼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건강실태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는 ‘건강습관’, ‘치아건강’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습관’ 199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 이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건강습관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1~2005년에는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보육시설이 건강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 실태 5편,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2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건강습관에 관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지수, 2006; 김희순, 2008; 이정숙, 2009).

2011년 이후에는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4편, 질병관리 실태 2편, 건강생활습관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치아건강’은 1996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1년 이후에 6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건강’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유아들의 구강관리에 관한 보호자의 인지도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01~2005년에는 치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1편, 교사의 구강보건 의식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2편, 보육교사의 유아 구강건강 관리 행위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 2편, 보육교사의 유아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 2편, 영유아 구강검진에 관한 연구 2편이 이루어졌다. 2006년 이후부터 어머니와 유아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김은정, 2013; 심미정, 2012)와 보육교사의 유아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연구(권경아, 2008; 정연미, 2012), 영유아 구강검진에 관한 연구(김정인, 2011; 신한나, 2013)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건강인식

‘건강인식’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이후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시기별로 1편, 3편, 7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는 2002년 예비 보육교사의 건강지식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를 시작으로, 2006~2010년에는 보육교사의 건강지각 및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 2편, 영유아 보호자의 인식 연구 1편이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에 관한 인식 4편,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1편, 부모의 영유아 건강 인식 1편, 환경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건강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건강교육

‘건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건강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교육실태’에 관한 연구는 2004년, 2006년, 2011년에 각 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이후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06~2010년 사이에 어린이집 유아 건강프로그램, 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2편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 개발 1편, 영유아교사 건강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1편,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은숙(2013)은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생태학적 모형을 개발하여 아동의 건강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박현정(2013)은 Dick & Carey의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여 영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영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 심폐소생술능력이 향상되어 영아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이후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 학술지에 많은 연구물이 보고되고 있다.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는 2001~2005년에 어린이집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1편, 어린이집 영유아의 정신건강 척도 제작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2편,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1편, 부모와 유아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 2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가족과 유아 행복감에 대한 연구 1편, 어머니의 애착과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연구 1편,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4편, 예비 교사의 정신건강 2편, 어린이집 아동의 정신건강 3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교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영유아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 교사·유아·학부모의 영양에 대한 인식, 영유아 영양교육, 어린이집 급·간식에 관한 연구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8> 어린이집 영양관련 연구 동향

범주	'91~'95		'96~'00		'01~'05		'06~'10		'2011~		계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수유·이유	-	-	2	-	-	-	-	-	-	-	2	
영양 실태	영양섭취	-	3	-	1	1	1	2	1	1	3	13
	식행동과 식습관	-	-	1	1	2	1	2	1	3	3	14
영양인식	-	-	2	3	-	2	9	2	7	-	25	
영양 교육	실태	1	-	-	-	1	5	3	1	-	11	
	프로그램개 발 및 효과	-	-	-	-	1	1	2	4	1	-	9
급·간식연구	-	1	-	-	-	1	6	3	5	1	17	
총계	1	4	5	5	4	7	26	14	18	7	9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영양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1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점차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와 관련하여서는 ‘영양실태(N=29)’, ‘영양인식(N=25)’, ‘영양교육(N=20)’, ‘급·간식(N=17)’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1년 이후 한편 이루어

졌다가 2001년 이후 다시 연구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다른 하위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연구물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영양사 배치 어린이집이 많지 않으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1) 영양실태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수유·이유’, ‘영양섭취’, ‘식행동과 식습관’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영양실태’와 관련하여서는 1991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수유·이유’는 1996~2000년 사이에 영유아기 수유 및 이유 실태에 관한 연구, 영유아 어머니의 이유식에 대한 지식 정도 및 실태조사 연구 등 2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와 관련하여 1991~1995년에는 저소득층 유아원 원아의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 3편이 이루어졌다. 1996~2000년에는 보육시설의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1~2005년에는 어린이집 아동의 철분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 아침결식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 등 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6~2010년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영양상태 2편, 나트륨 섭취 관련 연구 1편이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유아의 당 섭취 관련 연구 1편, 어린이집 영양에 관한 연구 2편이 진행되었다. ‘식행동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들은 1996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6~2000년에는 보육시설 영유아의 식습관 및 기호도, 어린이집 식생활 실태조사 등 2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1~2005년에는 영유아의 식생활 태도 2편, 보육시설 주·부식이 아동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영유아의 식생활 습관과 부모 및 교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부모의 식품선택과 영유아의 식습관 관계 1편, 영유아들의 편식행동 2편, 나트륨 섭취 관련 식태도 조사 1편,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1편, 식품 알레르기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양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영양섭취와 식행동과 식습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시간 보육기관에 머무르는 영유아의 영양섭취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들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 (2) 영양인식

‘영양인식’에 대한 연구는 1996년부터 시도되어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6~2000년에는 교사의 영양인식 및 영양지식 3편, 교사의 영양에 대한 이해와 태도 2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경애(2000)는 영유아기 영양에 관한 어린이집 교사의 지식을 조사하였는데, 영유아 영양지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1~2005년에는 영유아 영양에 대한 인식 및 지식에 관한 연구 2편이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보육교사의 영양에 대한 인식 및 지식 5편, 영양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5편, 부모와 교사의 영양에 대한 태도 및 인식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텃밭 가꾸기 활동과 영아의 영양지식 2편, 학부모의 영양 인식 1편, 보육교사의 영양지식 및 인식 4편 등이 이루어졌다. 구자림(2011)과 오양희(2012)의 연구를 통해 텃밭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식생활 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양인식과 관련된 실태는 대부분 보육시설의 교사나 원장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로 영양관

런 운영 전반을 보여주며 균형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3) 영양교육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영양교육 실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나눌 수 있다. ‘영양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활발히 진행되다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영양교육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1994년 어린이집 교사의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어린이집 유아 요리활동을 통한 영유아의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교사들의 영양교육 실태 5편, 영양교육에 관한 보육시설과 부모의 요구도 비교 1편, 유아의 영양교육 2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2011년 이후에는 자연친화적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영양교육의 현시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양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와 관련하여 2001~2005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가정 및 지연사회를 연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2편, 유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편, 영유아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편식지도를 위한 통합적 요리프로그램 개발 1편, 보육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루어졌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와 관련하여 2001~2005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가정 및 지연사회를 연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2편, 유아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편, 영유아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편식지도를 위한 통합적 요리프로그램 개발 1편, 보육시설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영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이후 활기를 띠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영양사 배치 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배치에 대한 기준 조정과 더불어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영양관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영유아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원장 및 보육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과 보수교육 교과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아 영양교육 관련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어린이집 급·간식

‘급·간식연구’에 대한 연구는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15년간 2편에서 2006년 이후 9편으로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1995년 어린이집 식사 및 간식제공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유아교육기관의 급식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 어린이집 점심시간 운영 2편, 간식 운영 1편, 급식지도 1편, 급식 운영 실태 5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지영(2008)과 김수연(2009)의 유아 급식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급식운영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 및 급식 관리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지침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친환경 연구 2편, 보육시설의 급식 실태 1편, 급식위생 및 안전 관리 3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린이집의 급식과 간식을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적합한 급식과 식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안전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의 안전실태,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영유아 학대에 관한 연구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9> 어린이집 안전관련 연구 동향

범주	'91~'95		'96~'00		'01~'05		'06~'10		'2011~		계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학위	학술지		
안전 실태	기관안전사 고	-	1	1	3	-	2	1	3	4	2	17
	시설·용품	-	-	2	1	11	2	4	3	2	1	26
안전인식		-	-	1	1	6	3	9	3	5	11	39
안전 교육	실태	-	-	1	1	5	2	6	2	4	2	23
	프로그램개 발 및 효과	-	-	-	1	-	-	2	1	-	2	6
영유아학대		-	-	1	1	2	2	-	1	-	3	10
총계		-	1	6	8	24	11	22	13	15	21	12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1년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점차 증가하여 2001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실태(N=43)’, ‘안전인식(N=39)’, ‘안전교육(N=29)’, ‘영유아학대(N=10)’의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모든 하위범주에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인식이 건강의 다른 하위주제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1) 안전실태

‘안전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안전 사고’, ‘기관안전 사고’, ‘시설·용품’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실태’에 관한 연구는 1991년 시작되었으며, 2001년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도되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관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1995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연구를 시작으로, 1996~2000년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연구 4편이 이루어졌다. 2001~2005년에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실태 1편, 보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체계 1편 등이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실태 3편, 유아교육기관 주변영역의 안전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설·용품’과 관련하여 1996~2000년에는 놀이시설 안전실태 2편, 안전 보육환경 1편 등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2005년에는 통학버스 안전 실태 2편, 놀이 시설물 1편, 실내·외 안전 환경 7편, 보육시설 안전관리 3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실외 놀이시설 1편, 유아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실태 1편, 실내·외 환경 안전 2편, 시설의 피난안전 및 소방 설비 3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연구 1편, 통학차량 안전 1편, 실내 공간 설비 및 소방 설비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의 안전실태 및 현황과 관련하여 점차 안전사고의 실태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실내·외의 안전사고 실태에서 보다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안전사고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2) 안전인식

‘안전인식’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시도되어 2001년 이후 활기를 띠며 꾸준히 연구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안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1편,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에 대한 유아의 지각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2005년에는 유아교사의 안전지식 및 인식 4편, 부모의 안전인식 4편, 어린이 보건·안전체험실 운영의 교육적 효과성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인식 7편,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의 지식 및 인식 2편, 유아 안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 1편, 교통안전교육과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과의 관계 1편, 유아의 사고 위험 지각성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인식 9편, 안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의 비교 1편, 예비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1편,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 4편, 영아를 위한 통합적 안전교육 활동이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채영란(2009)은 유아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사가 실제 제공하는 안전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교실환경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엄세진(2013)의 보육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태도, 안전실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안전지식, 안전태도, 안전실천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선화(2012)의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 안전실천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3) 안전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은 ‘안전교육실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나눌 수 있다. ‘안전교육실태’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는 1996년 이후 시작되었으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총 6편으로 많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전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1996~2000년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 효과 분석 1편, 유아교육기관 안전교육 실태조사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2005년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교육 5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도 1편,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비교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6~2010년에는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1편,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안전교육 3편, 유아교육기관의 교통안전실태 1편,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1편,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 1편, 예비 유아교사 안전교육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안전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1편,

소방안전교육 1편, 교사의 안전교육 요구도 1편, 자연재해 안전교육 실태 1편,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태도 1편, 통합적 안전교육활동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1999년 농어촌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6~2010년에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유아 유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1편, 놀이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에는 유아를 위한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부모의 아동안전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정원(2011)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유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과 인터넷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의 형성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유아학대

‘영유아학대’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2000년에는 성 학대 예방교육 및 성 학대 이해와 대처 방안과 관련되어 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1~2005년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2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련성 1편,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연구 1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예비유아교사가 자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에는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분노와 아동학대의 관련성,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관한 모니터링,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차영숙(2009)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실습을 다녀온 예비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교사교육과 더불어 현직교육의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어린이집 영유아학대 관련 논문을 통하여 초기에 비하여 최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법규와 평가인증지표 및 다양한 관련 연구물을 고찰해 봄으로써 보육시설의 질 높은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향후 양질의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고해야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치며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어 어린이집에 보급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 당시 건강진단과 관련



된 1개 조항만 있었으나 이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건강관리, 치료, 예방, 급식, 안전공제사업, 예방접종, 비상재해대비시설, 차량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100인 이상의 시설에는 간호사 및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나 교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모든 영유아들이 동등하게 건강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강력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세한 어린이집의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외된 계층이나 영유아가 없이 고르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보육시설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이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임미혜, 채혜선, 2011),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은 여전히 신체적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사회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후 개정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1962년 제정될 당시에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만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으나 이후 아동학대,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 안전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실시해야 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종류를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주기와 시간, 내용, 방법을 제시하여 어린이집에서 지침에 따라 바로 혼동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뿐 아니라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다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와 함께 시설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도록 점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의무화 및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례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아동학대의 발견, 신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와 관련된 평가인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하위 영역 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평가지표는 2개의 항목으로 전체 평가지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영유아의 삶에 중요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평가지표 또한 1주기 13개 항목에서 수정되어 2주기에는 12개의 항목으로 적절성이 고려되었으며, 안전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하위항목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져 보육현장에 더욱 적합

한 평가인증을 지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중반부터 평가인증지표 일부 개정, 우수 사례 기준 변경, 현장관찰 운영 개선 등 보육현장에 실태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는 3주기 평가인증지표 개정 작업이 착수된 상태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의 64.3%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기준 및 참여방법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와 관련된 2000년 이후의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 중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의 건강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건강, 영양, 안전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영유아기부터 형성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많은 교사들이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나 이를 위한 교육은 교사에 따라 그 실행정도가 다르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지원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시기부터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실천중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과 관련하여서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이나 교사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에 따른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원장 및 보육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과 보수교육 교과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유아 영양교육 관련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정원, 김승옥, 홍기목(2011). 유아를 위한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5(3), 323-342.
- 곽은복(2002).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 구자립(2011). 텃밭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경아(2008). 보육교사의 유아구강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2009). 서울·경기지역 어린이 급식 운영 현황 및 급식 지원 요구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2013).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과 행태에 따른 자녀의 구강건강행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인(2011). 영유아 구강검진 및 만족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수, 한경자(2006). 서울시 1개 구 구립 보육시설의 영유아 건강관리 실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1), 25-33.

- 김지영(2008). 동작구 보육시설의 급식운영실태 조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순, 라진숙, 이해정, 최은경(2008).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현황.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3), 295-304.
- 박경애, 이지현(2001). 영유아 영양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식. *열린유아교육연구*, 5(3), 51-65.
- 박은숙, 임여진, 조은지(2013).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 개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1), 59-68.
- 박현정(2012).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 신한나(2013). 국민건강보험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미정(2012). 전라남도 일부지역 부모의 영유아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관리행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 (일부개정 2013.03.23).
- 아동복지법. 법률 제 제11572호 (일부개정 2010.12.18).
- 엄세진(2013). 보육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태도, 안전실천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111-12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3.12.31).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251호 (일부개정 2014.1.14.).
- 오양희(2012). 텃밭 가꾸기 활동이 유아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영(2011).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아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화, 정윤경(2012).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안전지식, 안전인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115-133.
- 이기현(2009). 유아 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3(3), 69-96.
- 이순영(2010).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종사자 인식 연구: 서울시 강북구 국공립 민간(사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 이성옥, 민하영, 이명미, 한유진, 장영은, 최나야, 김지현, 김지경, 정현심(2008). **영유아 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 이정숙, 김성재(2009). 유아기 신체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30(3), 177-196.
- 임미혜, 채혜선(2011). **영유아 건강교육**. 양서원.
- 정미라, 조경자, 배소연(2004). 유아 건강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24(7), 285-312.
- 정연미(2012). 대구지역 보육교사의 유아 구강건강 관련 제공 실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영은, 성영화, 이숙자(2011). **아동건강교육**. 서울: 공동체.
- 차영숙, 문혜련(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61-80.

채영란, 신수경(2009). 유아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실환경 안전실태와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3), 397-412.

한국교육개발원(2012). 독일: 학생 건강검진을 위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학교방문. 출력일 2012년 09월 21일.

Marotz, L. (2012). *Health, safety, and nutrition for the young child* (8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Morrison, G. S. (1998).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7th ed.). NJ: Prentice-Hall Inc.

Sorte, J., Daeschel, I., & Amador, C. (2012). *Nutrition, health, and safety for young children*. New York: Pearson.

Susan, M. R. (2013). Pre-K preparation recommendations. *National Association for Kinesiology in Higher Education(NAKHE)*, 65(1), 1-13.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recent trends of laws and evaluation criteria of health, nutrition, and safety in child care centers, and addres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them. To this end, we analyzed Child Care Laws, Child Care Acts, Child Care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Criteria, as well as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s that have been published on these issues since 1991. Through a comprehensive and critical review, we revealed three following findings in terms of child health, nutrition, and safety.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for all children's health, nutrition, and safety, or to discuss measures corresponding to those regulations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care to every child. Second, a careful examination of accreditation standards on health, nutrition and safety found that, although specific actions and criteria on these issues were already prepared, their implementation is not mandatory and the quality of provided health, nutrition and safety is not properly guaranteed. This finding shows that what is still necessary is to devise effective plans for handling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processes of child care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Third, among the three categories of health, nutrition, and safety, the topics on safety were found to be studied most frequently, whereas the other two topics were considered much less. It thus indicates that more research on health and nutrition are necessary.

▶ *Key Words: health, nutrition, safety, child care laws, child care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criteria*

논문투고	2013. 12. 15.
수정원고접수	2014. 04. 06.
최종게재결정	2014. 04. 22.